

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1. 6. 10.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의자: 안영란 의원 등 6명(원종진, 조복희, 배용식, 김기열, 박종길)
- 발의일자: 2021. 5. 20.
- 회부일자: 2021. 5. 28.
- 상정 및 의결: 제280회 달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1. 6. 10.)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회계법」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기본이 되는 상위법의 제명 변경, 조문 변경 사항 반영과 재정보증방법의 상위법 위배소지를 제거하고자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상위법의 제명 변경, 조문 변경 사항 반영
(안 제1조, 안 제2조, 안 제7조)
-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56조에 의거 재정보증방법 변경(안 제3조)

4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: 「지방회계법」 제46조, 제49조,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1. 5. 20. ~ 2021. 5. 31.)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지방회계법」이 제정·시행(2016. 11. 30.)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 근거인 “지방재정법”을 “지방회계법”으로 제명 및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, 법령에 명시된 재정보증 방법을 추가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상위법령의 위배소지를 없애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

-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방법을 상위법에 따라 공제가입까지 확대한 개정안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,
- 회계관계공무원의 신상과 관련된 일이므로 최대한 공무원에게 혜택이 가고,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하기 바람.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